

학적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24.06.17.
개정 2025.05.12.
개정 2025.11.17.
개정 2026.08.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8조(편입학), 제19조(재입학), 제30조(휴학), 제31조(복학), 제32조(자퇴 및 제적), 제33조(전과), 제54조(진급 및 유급), 제55조(학사경고), 제57조(졸업, 수료, 취소, 학위취득유예)에서 정하지 못한 학적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적변동의 전반에 적용하며, 상위법 및 특별한 규정 또는 총장의 허가를 얻은 사항은 본 규정에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장 편입학

제3조(편입학의 정의) 타 대학에 재적하였거나 재학하고 있는 자를 당해 편입학전형을 거쳐 타 대학에 당초 재학하였던 학년 이하의 학년에 입학할 허가하여 우리 대학의 학적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편입학 자격) ① 학칙 제18조(편입학)는 편입 학년 학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 자격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25.11.17.)

구분		지원 자격
2학년	국내·외 대학 출신	①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② 전문대학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본 규정 제31조의 1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자 중 제적(자퇴 포함) 후, 2개 학기 이상 경과자 ③ 4년제 대학교(사이버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본 규정 제31조의 1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①~③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점은행제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본 규정 제31조의 1학년 수료학점 이상인 자
3학년	국내·외 대학 출신	①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② 전문대학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본 규정 제31조의 2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자 중 제적(자퇴 포함) 후, 2개 학기 이상 경과자 ③ 4년제 대학교(사이버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본 규정 제31조의 2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①~③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점은행제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본 규정 제31조의 2학년 수료학점 이상인 자

2학기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재외국민 및 외국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항, 제2호, 제6조, 제7호에 한함) ㉡ 국외 대학의 경우, 국내의 전문대학 혹은 일반대학에 준하는 외국 소재 정규대학교(사이버대학은 제외)의 수학한자 ㉢ 2학기 편입의 경우, 편입 기준 하위 학년으로 편입한다. ㉣ ㉠, ㉡, ㉢항 외 기준은 2학년 1학기 편입, 3학년 1학기 편입 기준에 따른다.
-----	---------------	--

㉡ 편입학 세부 전형기준은 매 학년도(학기)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 ㉠항의 지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미 입학한 경우라도 입학을 취소하고 납부한 등록금(수업료 등)은 「대학등록금운영지침」 및 학칙에 따른다. (개정 2025.11.17.)

제5조(편입학의 여석) ㉠ 제3조에서 정한 편입학은 모집단위 별로 여석이 있을 경우, 모집단위별로 허가할 수 있다.

㉡ 편입학 여석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편입학의 등록 및 승인) ㉠ 편입학이 승인된 자의 등록금(수업료 등)은 「대학등록금운영지침」 및 학칙에 따른다. (개정 2025.11.17.)

㉡ 편입학의 승인 및 기타 세부 사항은 편입학 당시 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한다.

제7조(편입학 학점인정) 편입학자는 편입학한 학기에 학점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편입학한 학기에 휴학하는 경우 복학하는 학기에 신청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6.08.10.)

제3장 재입학

제8조(재입학의 정의) ㉠ 재입학은 대학에 재적하였던 사실이 있던 자를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의 범위 안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 동일학년 이하에 입학을 허가하여 재수학의 기회를 부여 하는 것을 말한다.

㉡ 조기재입학은 자퇴 및 제적된 학기가 아닌 직전 학기에 재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8.10.)

제9조(재입학의 자격) ㉠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1.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2. 기타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도록 정한 자

제10조(재입학의 여석) ㉠ 제8조에서 정한 재입학은 총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 제적 당시 모집단위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적 당시 모집단위가 정지된 경우는 학칙에 따른다.

㉡ 다음 각 호의 경우, 재입학 여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법령에서 정원을 정하는 모집단위
2.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모집단위

제11조(재입학의 승인 및 등록) ①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총장이 정한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지도교수와 상담 후, 스쿨원장이 승인해야 한다.

② 재입학 신청자는 재입학 학기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재입학을 최종 허가하며, 개강일 이후 3주(21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재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재입학이 승인된 자의 등록금(수업료 등)은 「대학등록금운영지침」 및 학칙에 따른다. (개정 2025.11.17.)

제12조(재입학자의 성적처리) ① 재입학생은 재입학이 허가된 학기 이전학기까지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② 조기재입학을 신청하는 학생은 조기재입학 예정 학기에 기 취득한 성적 일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08.10.)

제4장 전과

제13조(전과의 정의) 자기 적성과 전공의 불일치 사유 등으로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학적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전과의 범위 및 여석)

① 전과의 범위는 모든 모집단위로 할 수 있다. 단 각 호의 경우,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모집단위
2. 상위 법령에서 정원을 정하는 모집단위
3. 모집 정지된 모집단위

② 전과의 전입 여석은 학년도 학기별 총장이 정할 수 있으며 스쿨(전공) 및 교육과정의 특성과 수용능력 등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단, 전출 여석은 제한하지 않는다.

③ 전과 전입 여석은 모집단위별 학년별로 정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사전 공지한다.

제15조(전과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① 전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1개 학기 이상을 등록 및 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전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자격이 갖춰진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신청하고 지도교수와 상담해야 한다.

③ 전과는 매 학기 시작 전 신청기간을 두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단, 모집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전문학사학위 편입생,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생은 전과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⑤ 학제(1년제, 2년제, 3년제 등)가 서로 다른 경우, 전과할 수 없다. 단, 모집정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칙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전과할 수 있다.

제16조(전과 절차 및 승인) ① 전과 절차는 모집단위별로 정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사전 공지한다.

㉔ 전과 절차는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전체 평점평균이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단, 스쿨(전공)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시험 등의 별도 절차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㉕ 전과 무시험 선발 중 전체 평점평균이 같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성적 순위를 정해 선발한다.

1. 백 점 환산점수가 높은 자
2. 전체 취득학점이 많은 자
3. 전공 취득학점이 많은 자
4. 1, 2, 3호가 같은 경우, 선발여부는 스쿨에서 정한다.

㉖ 전과 절차 중 선발 최소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최소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여석과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㉗ 전과 신청을 받은 모집단위는 정해진 선발기준에 따라 스쿨원장의 승인을 거쳐 선발하여야 한다.

제17조(전과 학점인정) ㉘ 전과가 허가된 자의 전과 전 취득한 전공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단, 전과 절차 중 전입 모집단위에서 스쿨원장의 승인을 거쳐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㉙ 전과가 허가된 자는 전출 모집단위에서 정하는 필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과가 승인된 학기부터는 전입 모집단위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전출 모집단위가 모집 중지되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으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1.17.)

제18조(전과 승인자의 등록) 전과가 승인된 자의 등록금(수업료 등)은 「대학등록금운영지침」 및 학칙에 따른다. (개정 2025.11.17.)

제5장 휴학

제19조(휴학) ㉚ 병역의무,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 절차에 따라 휴학을 신청하고, 지도교수와 상담해야 한다.

㉛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휴학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학정보시스템에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17.)

구분	기간	필요서류	비고
일반휴학	최대 1년	휴학계획서	
군휴학	복무 기간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군 복무기간 연장 시 연장 가능
질병(사고)휴학	최대 1년	진단서(4주 이상)	
육아휴학	최대 1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고등교육법」 제23조의4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㉜ 일반휴학은 1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수업연한 초과자의 휴학 기간은 한 학기 단위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08.10.)

제20조(휴학자의 등록금 처리) 등록을 마친 학생의 휴학에 따른 등록금 처리 기준은 다음

표와 같으며, 조기복학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08.10.)

구분	휴학시점	등록금 처리
일반휴학	수업일수 1/2선 이내	복학 학기 등록금(수업료 등)으로 대체
	수업일수 1/2선 초과	「대학등록금운영지침」 및 학칙에 따름
군휴학	수업일수 3/4선 이내	복학 학기 등록금(수업료 등)으로 대체
	수업일수 3/4선 초과	「대학등록금운영지침」 및 학칙에 따름
질병(사고)휴학,육아휴학	4주 이상의 휴학 필요 시	복학 학기 등록금(수업료 등)으로 대체

제21조(휴학의 제한) ① 각 호에 대상 및 학기는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없다.

1. 신입생과 편입생의 최초 정규학기
2. 재입학, 전과, 조기복학이 허가된 최초 정규학기
3. 졸업유예가 승인된 후 모든 학기
4. 등록금 분할 납부를 신청한 학기(최종 완납한 경우는 예외)
5. 기타 총장이 휴학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정한 대상이나 학기

② 모집 정지된 모집단위의 학생은 학칙에서 정한 학년별 전공유지기간 후 휴학 및 휴학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며 휴학 기간 종료시점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한다.

제22조(휴학의 연장) ① 휴학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휴학의 사유가 계속되는 등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정해진 기간 내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신청하고 지도교수와 상담해야 한다.

② 일반휴학 중 군휴학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휴학으로 변경하여 신청해야 하며, 복무 기간 연장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휴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9조 ①, ③항에도 불구하고 휴학 기간 경과, 미등록, 미수강으로 인한 제적 대상자 중 수업일수 1/4선을 초과하여 본인의 의사표현이 없는 학생은 교무 관련 부서에서 최대 1년까지 일반휴학으로 직권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08.10.)

제23조(휴학취소) ① 휴학을 신청한자가 휴학 사유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업일수 1/4선 이전에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해당 스쿨 및 관련 부서에 즉시 연락하고 조치 받아야 한다.

② 군휴학 후 제대 및 귀향자는 원인발생 1주일 이내에 관련 서류(귀향증 등)를 첨부하여 군휴학을 취소하여야 한다. 단, 수업일수 1/4선을 초과한 경우, 일반휴학으로 휴학연장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제6장 복학

제24조(복학) ① 제19조에 의한 휴학자는 휴학 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한 경우, 수업일수 1/4선 이내 절차를 통해 복학 신청해야 한다. 단, 제22조 ①항의 해당하는 경우 복학 신청 없이 연장하여 휴학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08.10.)

② 제19조에 의한 군휴학자 중 제대일자(휴가 등 포함)가 수업일수 1/4선을 경과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 서류(전역예정증명서, 잔여휴가 확인서 등)를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절차를 통해 복학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㉓ 조기복학은 복학예정 학년 학기 직전 학기로 복학하는 것을 말한다. 조기복학의 경우, 복학 신청 후 지도교수와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8.10.)

㉔ 조기복학을 신청하는 학생은 조기복학 예정 학기에 기 취득한 성적 일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08.10.)

㉕ 모집 정지된 모집단위의 학생은 학칙에서 정한 학년별 전공 유지 기간 후 동일한 모집단위로 복학할 수 없으며 세부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제7장 자퇴 및 제적

제25조(자퇴) ㉑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이 정한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지도교수와 상담 후, 스쿨원장이 승인해야 한다.

㉒ 자퇴한 자가 납부한 등록금이 있는 경우, 「대학등록금운영지침」 및 학칙에 따른다. (개정 2025.11.17.)

제26조(제적) 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제적 처분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2. 휴학 기간 만료 후 수업일수 1/4선을 초과하여 복학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6.08.10.)
3. 재학 중 수업일수 1/4선을 초과하여 수강신청하지 아니한 자
4. 본인 사망
5. 기타 총장이 제적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㉒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납부한 등록금(수업료 등)이 있는 경우, 「대학등록금운영지침」 및 학칙에 따른다. (개정 2025.11.17.)

제8장 학사경고, 진급, 유급

제27조(학사경고) 정규학기에 취득한 성적 평점평균이 1.0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기별 학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학사경고를 부여한다.

제28조(진급 및 유급) ㉑ 이전 학년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상위 학년에 진급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는 성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26.08.10.)

㉒ 동일 학년 연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유급(상위학년으로 진급을 제한)처리하며, 유급된 학년 학기의 성적 일체는 취소한다. (개정 2025.11.17.)

제29조(학사경고자 및 유급에 대한 후속조치) ㉑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 그 사실을 성적표 등에 표기하여 통보할 수 있다.

㉒ 교무 관련 부서는 학사경고 사실을 스쿨에 통보해야 한다.

㉓ 학사경고 및 유급 처리된 학생의 지도교수는 학년에 따른 역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강

신청 지도 및 상담을 해야 한다.

④ 학사경고 및 유급 처리된 학생은 대학에서 지정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기타 관리가 필요한 학생의 후속조치는 교무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스쿨 행정실과 협의할 수 있다.

제9장 졸업, 수료, 학위취득유예

제30조(졸업) ①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충족하고, 다전공제 이수에 관한 규정 제8조 ②항에 의하여 다전공제를 이수한 자는 전공명을 표기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6.08.10.)

② 학위별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아래 표와 같다. 단, 전공별로 이수학점을 제외한 졸업요건을 별도로 두어 운영할 수 있다.

학위	학년제	이수학점(최소 전공학점)	교양학점	비고
전문학사	2년제	78(50)	8	
	3년제	117(80)	10	
학사	1년제	137		기 취득 117학점 이내 포함

③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31조(수료)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 표와 같다.

학위	1학년 수료	2학년 수료	3학년 수료
전문학사	39학점 이상	78학점 이상	117학점 이상
학사	137학점 이상 (전문학사과정 117학점 인정 포함)	—	—

제32조(학위취득유예 신청 및 확정) ① 학위취득유예 신청은 졸업학점과 졸업요건이 충족된 학생이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08.10.)

② 학위취득유예는 성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6.08.10.)

③ 학위취득유예가 확정되면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6.08.10.)

제10장 보고

제33조(보고) ① 교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정해진 기간 중에 반드시 보

고해야 한다.

1. 고등교육통계조사, 대학정보공시 등에 따른 재학생 증원을 현황
2. 학기별 학적변동(전과, 복학, 휴학, 자퇴, 제적, 졸업, 재입학, 편입학 등)과 학사경고 현황
3. 월별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현황
4.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내용

② 학적 관련 현황을 보고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은 반드시 포함한다.

1. 모집단위, 정원내외, 학년, 전년대비
2.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내용

제11장 기타

제34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부서장을 거쳐 총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08.10.)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8월 15일부터 시행한다.